

한국생산성본부 인권정책

서문

한국생산성본부는 모든 업무 수행,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본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유엔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 국제노동기준(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등을 따르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및 전 세계적 보편 인권을 존중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업무의 효율성 개선 및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인권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전용 신고센터를 통하여 누구나 제보 가능하며 제보 접수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인권정책은 회사 내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자회사 및 종속회사, 합작사, 협력회사 및 파트너, 고객, 정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 및 투자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생산성본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요영역

1. 직원 건강 및 안전 문제 관리

한국생산성본부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및 안전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을 마련합니다. 또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의식을 고양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당 요인을 제거합니다.

2. 차별금지

한국생산성본부는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출신 지역, 장애 유무, 결혼 여부,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성 정체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직무 자격 요건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3. 인도적 대우

한국생산성본부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 폭언,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비인도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업무 시간 외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합니다.

4. 직원 경력 관리

한국생산성본부는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생산성본부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평등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5. 근무 조건

한국생산성본부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에 따른 정규/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에 대한 자발적, 초과 근로수당 역시 현지 법에 따라 제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과 1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 아동노동 금지

한국생산성본부는 미성년자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최소 노동 연령은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더욱 엄중히 다루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이에 당사의 국내외 사업장의 신규 입사 시 연령검사 등 엄격한 입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최소 노동 연령 미만의 아동 근로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학생, 실습 및 견습생 등)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위험,유해 업무 및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인권정책

8. 강제노동

한국생산성본부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현대적 노예제도,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유를 구속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분증 혹은 중요 개인 문서의 양도를 요구하는 것을 금합니다.

9. 결사의 자유 보장

한국생산성본부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근로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합니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10. 생활 임금

한국생산성본부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과 적절한 생활 수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공제는 정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통해 적절히 알립니다.

11. 지역주민 및 토착민 권리 보장

한국생산성본부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 자연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한국생산성본부의 사업 활동에 반영합니다.

참고 자료

- 국제권리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국제노동기구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ILO Fundamental Conventions)
- 국제노동기구의 직장에서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 원칙에 관한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 다국적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UN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 유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유엔 세계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대한민국 헌법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한국생산성본부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3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나아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본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고 채널: 한국생산성본부 사이버신문고(https://www.kpc.or.kr/PTWCC005_stmCtr_index.do?gubun=main8)

제정: 2022.06.30.

개정: 2024.01.01.